

**좋은 일자리, 강한 기업
함께하세요! 경기도 4.5일제**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FAQ

PART I 4.5일제 사업 개념	p1
PART II 4.5일제 사업 지원내용	p2
PART III 4.5일제 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p3
PART IV 기타 문의사항	p5

PART I 4.5일제 사업 개념

Q1. 경기도 4.5일제가 뭐예요?

→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화두이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4.5일제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노동시간을 점차 줄여나가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매주 주 1회 반일 근무,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가운데 노사합의로 하나를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명칭	유형1. 반일근무제	유형2. 단축근무제	유형3. 격주휴무제	유형4. 혼합형
구분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4일제	유형1~3 中 선택
정의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되, 특정요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간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	기존 근무 형태를 유지하되, 하루 근로시간을 줄여 주간 총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하여 격주로 주4일 근무를 시행하는 제도	근로자별로 개인의 상황 및 선호에 따라 희망하는 유형 자유롭게 선택
1일 근로시간	주4일: 8시간 근무 주1일(특정요일): 3~4시간 근무	1일 7시간 근무	1주차 주5일, 1일 8시간 2주차 주4일, 1일 7~8시간	유형1~3에 따라 상이함
주간 총 근로시간	35~36시간	35시간	35~36시간(2주단위 평균)	35~36시간

Q2. 기업에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 사례를 보면 직원 퇴사율, 병가사용율 등이 줄어들고, 재직기간과 입사경쟁률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20~30대와 육아 시간이 필요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기업에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

참고영상 : <https://youtube.com/watch?v=L85Up7riiJw&si=5c8agsBJ8o7mmtEy>

Q3. 기업에는 어떤 부담이 있나요?

→ 4.5일제 사업은 노동시간은 줄어도 임금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임금 중에서 경기도 지원분(노동자 1인당 월 26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PART II 4.5일제 사업 지원내용

Q4.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 되나요?

→ 단축된 시간별로 차등지급 합니다.

연번	구 분	금 액	비고
1	주당 소정근로시간 5시간 단축	인당 260,000원	
2	주당 소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	인당 210,000원	
3	주당 소정근로시간 3시간 단축	인당 160,000원	
4	주당 소정근로시간 2시간 단축	인당 110,000원	

Q5.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근태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 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7개월분의 지원금 지급
-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근태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 시범사업 참여 후 근태관리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게 되며, 시스템 도입 2개월 이후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ex 25년 6월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 8월 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분의 지원금이 지급)

Q6.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 지급 불가능 사유가 없고 사업에 성실히 참여한 기업이라면 시범사업 운영기간 (25년~27년) 동안 계속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연말 기업 평가 시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 결정)

Q7.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해당 기업의 근무 형태에 맞는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근태관리 시스템 개선·향상 및 사용·유지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Q8. 참여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 4.5일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컨설팅의 목적은 4.5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1차로 4.5일제 시범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전 ‘근로시간 단축 정착 컨설팅’을 실시하여 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법, 제도 등 근로조건 전반의 필수 조정사항을 컨설팅합니다.

정착컨설팅 종료 후 2차로 ‘근로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임금삭감 없이 효과적인 생산 활동 및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개선 지원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일하는 방식, 생산공정, 작업환경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3차로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단’을 통해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업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PARTⅢ 4.5일제 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Q9.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요?

→ 네 시범사업 참여기간 동안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Q10. 반드시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하나요? 부분적으로 참여해도 되나요?

→ 네 반드시 사업장 단위로 전 직원 참여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내 직무별로 사무직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직은 제외하는 경우 등은 불가합니다. 경기도 내 A지사, B지사가 있는 경우 B지사는 단축하지 않고, A지사 소속 전 직원만 참여하는 경우 등은 가능합니다.

Q11.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 네. 최근 1년 이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업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추가로 2~5시간 단축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Q12. 경기도 내 본사와 지사가 나뉘어있을 경우, 일부만 신청할 수도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경기도 내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본사, 지사 관계없이 일부만 신청도 가능합니다.

Q13. 기존에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출퇴근 기록만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기존 유연근무제 시행 중인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자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참여 기업 선정심사시 유리합니다.

Q14.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직원 중 일부가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퇴사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15일 이후 퇴사시 전액 지급됩니다.

Q15. 4.5일제 도입 후 부족한 인력이 생겨 신규 채용이 되는 경우 추가 지원이 있나요?

→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 채용된 인력이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한다면 입사일을 포함한 달을 제외한 그 다음달부터 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Q16. 외국인 참여가 가능한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법 적용 대상자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E-9, H-2 비자 소지자는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Q17. 최근 3개월 근태기록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나요?

→ 전자적·기계적 방식의 최근 3개월 근태기록을 제출하셔야 하나, 근태시스템이 없는 경우 기존에 관리하시던 방식의 근태자료(엑셀, ERP등)와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확약서를 대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태관리 시스템이 없는 기업의 경우 4.5일제 시범사업 선정 시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Q18.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기존 연봉 계약을 변경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변경 없이 노사 간 합의 후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Q19.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사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 노동조합이 없을 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PARTIV 기타 문의사항

Q20. 시범사업은 최대 3년간 운영된다고 하는데, 2025년에 참여하면 2026~2027년에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Q21.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근로시간 단축 방식 변경이 가능한가요?

→ 네. 노사합의 절차를 거친 후 변경 가능합니다.

Q22. 직원 개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 기업 내 사정에 따라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개개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개별 운영 가능합니다.(신청시 혼합형 선택)

Q23.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중, 예상치 못한 사유로 원래 근무시간으로 되돌아가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개월 이상 단축제도 유지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참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Q24.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4.5일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주4.5일제 사업은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종료 후 기업의 경영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 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자문과 컨설팅이 제공 될 예정입니다.

Q25.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등 타 기업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이미 타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4.5일제 시범사업 신청에 제한은 없지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기관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